

본 간행물에는 2020년 11월 10일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웹 페이지 nyc.gov/workers도 계속해서 지켜보십시오.

COVID-19 기간 동안 직장 복귀하기: 가사 노동자와 그 고용주를 위한 중요 정보

가사 노동은 각기 다르고 그 직장은 개인 주택입니다. 가사 근로자로는 유모, 가정집 청소부, 가정부, 가정 간호 근로자 및 재택 보육 근로자가 포함됩니다.¹ 본 간행물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사 노동자와 그 고용주를 대상으로 중요한 건강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섹션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가사 노동자를 위한 권장 모범 사례
- II. 고용주를 위한 점검표 및 자료
- III. 가사 노동자를 위한 기타 자료

비즈니스 및 가사 고용을 포함하는 뉴욕 주 보건 및 안전 가이드라인은 forward.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함께 원활히 이뤄지는 소통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개인 가정 환경에서 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좋습니다.

COVID-19 전파를 예방하는 4대 주요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1. 몸이 안좋은 경우 집에 머무르기: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검사](#) 포함) 또는 기타 필수적인 일을 위해 밖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몸이 아픈 경우 집에 계십시오.
2. 물리적 거리두기: 타인과 최소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3. 마스크 착용하기: 주변 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무증상 감염인 경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COVID-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손 위생 실천하기: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어 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접촉이 잦은 표면들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에 하지 마시고 팔에 대고 하십시오.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 웹 사이트 nyc.gov/health에서 제공하는 [뉴욕 시민들이 COVID-19에 대해 당장 알아야 할 사항](#)을 읽으십시오. COVID를 클릭하십시오.

¹ 가사 노동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는 전에 [가정 보건 종사자 및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를 위한 COVID-19 가이드](#) (환자 및 노인 보조원 포함, nyc.gov/health에서 이용 가능)를 발간했습니다. COVID를 클릭하십시오.

I. 가사 노동자를 위한 권장 모범 사례

1. 고용주와 안전 계획을 논의 및 개발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에 옮기십시오.
2. 가능한 COVID-19 노출에 대비하십시오.
3. 노출된 경우 유급 휴가 및/또는 보호 대상 휴가에 관한 귀하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계획의 효과 등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협의하십시오.

모범 사례 #1: 고용주와 안전 계획을 논의 및 개발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에 옮기십시오.

COVID-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로 무엇을 할지 고용주와 논의한 후 합의된 기대치와 절차를 서면으로 작성하십시오. 자택에 중증 COVID-19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노인이나 기저 질환 보유자,² 출퇴근자들 및 기타 잠재적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귀하가 개발한 안전 계획이 귀하와 해당 고용주에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안전 계획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건강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검진을 받을 사람, COVID-19³ 검사를 받을 사람, 정보를 추적할 시기 및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 검사는 매일 근무 시작 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 귀하의 고용주 및 고용주의 가구원은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p><i>COVID-19에 걸렸다고 해서 다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이나 기침과 같이 눈에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COVID-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 및/또는 최근에 뉴욕 주 검역 명단에 이름이 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돌아온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⁴</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플 COVID-19 검사 도구는 nyc.gov/health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OVID를 클릭하십시오.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는 개인 보호 장비(PPE)(예: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해야 하고 충분한 PPE 없이 자택에서 일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용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 PPE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과 착용 시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옷을 갈아 입거나 다른 걸쭉을 입어야 하는지 여부 등 필요한 모든 PPE를 확인하십시오. •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한 얼굴을 가리게 하십시오. 특히 상대방과 최소 6피트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⁵
위생, 청소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욕실 등 집에서 동선이 많은 구역과 출입문 손잡이, 수도꼭지 손잡이, 난간 및 조리대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청소하는 횟수를 포함한 청소 규칙을 정하십시오.
물리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자, 가구원이 아닌 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 집안에서 서로 안전한 거리로 떨어져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 야외 외출 시간 증가 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안전 활동을 계획하고, 자녀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시기, 물리적 교류가 가능한 자, 교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² COVID-19 및 면역 약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를 방문하십시오. COVID를 클릭한 후 "고위험군 예방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³ 무료 COVID-19 검사에 대한 정보는 nyc.gov/covidte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⁴ 제한 대상 주 목록을 포함한 뉴욕 주 COVID-19 여행 권고는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ravel-advisor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⁵ [COVID-19 얼굴 가리기: 질문 및 답변](#)은 nyc.gov/health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를 클릭하십시오.

팁 및 자료

팁:

- PPE는 마스크 이상의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매일 집에 들어갈 때 깨끗한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도록 지시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해야 하고 추가 PPE 용품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와 고용주는 대중 교통이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길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출퇴근시 자가용/승용차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원이 승차 요금을 부담할 경우 이용 예약 및/또는 보상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⁶
- 청소가 업무의 일부인 경우:
 - 가능하면 고용주가 없을 때 집을 청소하여 모든 이들의 노출을 최소화하십시오.
 - 연방 산업 안전 보건국의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⁷

자료:

안전 계획 서식을 제공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NDWA(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

<https://membership.domesticworkers.org/coronavirus/work-safely/return-to-work-safely/>

Hand in Hand:

<https://domesticemployers.org/support-during-the-coronavirus-pandemic/>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BusinessReopeningSafetyPlanTemplate.pdf

(한국어)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BusinessReopeningSafetyPlanTemplateSpanish.pdf>

(스페인어)

모범 사례 #2: 가능한 COVID-19 노출에 대비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분리 또는 격리 처치법에 대해 고용주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십시오.

- 귀하 또는 고용주의 가족 중 누군가가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였거나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 귀하 또는 귀하 고용주의 가족 중 누군가가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최근 COVID-19 비율이 증가한 주 또는 국가에서 돌아온 사람과 접촉한 경우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실행 계획을 세우고 휴가 옵션(유급 및 무급)에 대해 고용주와 협의하십시오.

중요 사항: 차별 및 보복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주는 귀하를 해고하거나, 집으로 보내거나, 귀하의 인종, 출신 국가 또는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인종, 출신 국가 또는 장애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 관행입니다. III. 뉴욕주 및 뉴욕시 인권 기관과 연계된 가사 근로자를 위한 기타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주의 가족 중 누군가가 노출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해야 할 일:

-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알립니다.
- 노출자에게 분리 또는 격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조언합니다.
- 본인의 업무 보고 부재를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알립니다.
- 업무 보고 부재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방법(예: 일부액 지급)을 알립니다.

⁶ COVID-19 공중 보건 응급 기간 동안 안전하게 통근하기는 [nyc.gov/health](https://www.nyc.gov/health)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를 클릭하십시오.

⁷ OSHA에 따른 근로자 권리(영어) 및 OSHA에 따른 근로자 권리(스페인어)는 [osha.gov](https://www.osh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노출되었을 경우:

- 고용주에게 알립니다.
-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사용합니다.

COVID-19 호텔 프로그램

상주 유모인데 본인 또는 고용주의 가족 중 누군가가 COVID-19에 걸렸거나 노출되었을 경우, 호텔에서 무료 격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웹사이트 nyc.gov/covid19hotel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844-NYC-4NYC(844-692-4692)로 전화하십시오. 호텔 프로그램은 0을 누른 다음 1을 누르십시오.

COVID-19 검사 및 의료 서비스

NYC Health + Hospitals는 이민 신분 또는 지불 능력에 관계 없이 검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NYC Test + Trace Corps로부터 격리를 포함한 다음 단계에 대한 지침이 전달됩니다. 자세한 정보:

-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test-and-trace/resources/>를 방문하거나
- (844) 692-469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모범 사례 #3: 노출된 경우 유급 휴가 및/또는 보호 대상 휴가에 관한 귀하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사 근로자는 시,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법률
- 뉴욕주 응급 COVID-19 유급 병가
- 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례(FFCRA) COVID-19 유급 병가

COVID-19와 관련해 시, 주 및 연방 유급 병가 법률에 대한 개요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유급 병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212) 436-0380으로 DCWP의 노동정책과 기준 사무소(OLPS)에 전화하십시오.

참고: 유급 여부에 관계없이 더 많은 휴가를 위해 고용주와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 사례 #4: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계획의 효과 등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협의하십시오.

COVID-19 팬데믹은 사람들의 업무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안전 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조건을 포함한 노동 조건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용주와의 빈번하고 정직한 소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근로 계약에는 [가사 근로자 권리 장전](#)에 명시된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 합의를 아직 갖지 못했다면, 고용주와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업무 책임과 권리가 포함된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서식](#)은 Hand in Hand 웹 사이트 domesticemployers.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타당한 사용 이유 유급 병가	유급 병가 금액 및 지급 요율
<p>뉴욕시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법률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질병, 부상, 증상에 대한 진단, 치료, 처치를 받았거나 또는 예방적 의료 관리가 필요할 때 공무원이 공중 보건상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나 보육 서비스 제공업체를 폐쇄했을 때 <p>시법은 이 세 개의 유급 병가 법률 중 가장 광범위한 법입니다.</p>	<p>2020년 9월 30일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30시간 근무마다 최소 1시간의 비율로 유급 병가가 발생합니다. 유급 병가는 누적되는 대로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시급을 받지만 현재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 받습니다. <p>*2021년 1월 1일부로,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 직장에서 직원은 매년 최대 56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습니다.</p>
<p>뉴욕주 응급 COVID-19 유급 병가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에서 명령한 분리 또는 격리(필수 또는 예방 격리 명령)¹⁰ <p>주법은 정부가 명령한 격리 또는 분리를 따라야 하는 가구원을 돌보는 휴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또는 분리 기간 동안에는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정책을 통해 유급 가족 휴가 또는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일자리 보호를 받습니다. <p>금액과 요율은 고용주의 규모 및/또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상기 정보는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가정합니다.</p>
<p>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례(FFCRA) COVID-19 유급 병가¹¹</p> <p>참고: 특정 소규모 고용주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유효 기간: 2020년 4월 2일-2020년 12월 3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격리 또는 분리 의료진 권장 자가 격리 COVID-19 증상으로 인한 의료적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 또는 의사가 권하는 격리에 따른 가구원의 돌봄 원격 학습을 위해 자녀의 학교가 휴교하는 날 또는 COVID-19로 인해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을 포함해 학교 또는 보육 시설 폐쇄로 인한 자녀 돌봄 그 외 관련 연방 기관에서 명시한, 대체로 비슷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가는 최대 2주까지 (8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는 일일 최대 \$511, 총 \$5,110까지 지급됩니다. 휴가는 최대 2주까지 (8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200, 총 \$2,000까지 일반 급여의 2/3가 지급됩니다. 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2항 바로 왼쪽 참조)는 2/3 급여로 최대 10주까지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p>휴가 금액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정보는 정규직 상태를 가정한 것입니다.</p>

⁸ 가사 근로자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또는 경우에 따라 최대 56시간)를 누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뉴욕시의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법률 개정안이 2020년 9월 3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workers를 방문하십시오

⁹ 뉴욕주 응급 COVID-19 유급 병가에 대한 상세 내용은 ny.gov/COVIDpaysickleave에서 확인하십시오. 직원용 사실 정보는 영어 및 스페인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¹⁰ 고용주용 COVID-19 유급 병가 문서(필수 분리 격리 명령) (855) 491-2667번으로 전화하거.

¹¹ FFCRA에 대한 상세 정보는 dol.gov/agencies/whd/pandemic을 방문하십시오. 직원용 사실 정보는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II. 고용주를 위한 점검표 및 자료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을 위한 점검표		
가사 노동자의 고용주로서 귀하는:		
알림		
1	대화할 때 개방적이고 정중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2	근무자와 안전 계획에 대해 협력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3	근무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예약된 정기 점검을 실시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4	COVID-19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서면 계약을 수정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5	근무 시간 중 및 근무 시간 외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귀하와 근로자 모두가 취할 예방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6	본인, 귀하의 가구원 또는 근로자가 COVID-19에 노출된 경우 근로자와 함께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7	근로자가 COVID-19로 인해 근무 조건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마스크 착용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가사 노동자와 다른 시간에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하는 등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유급 병가 법률		
8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 있는 병가 유형에 대해 숙지하였습니까? ¹²	<input type="checkbox"/> 예
보호 장비		
9	마스크 및 기타 필요하거나 요청된 PPE를 포함해 근로자를 위해 추가 PPE를 구입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10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물리적 거리두기		
11	근로자가 집에 있을 때 가능하면 가구원에게 물리적 거리를 두라고 지시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12	집에 온 방문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위생, 청소 및 소독		
13	집안을 가능한 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이 만드는 계획을 실행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14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자주 소독할 수 있는 추가 청소 용품을 마련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자료:

- **전국 가사 노동자 협회:** 가사 노동자의 권리와 자료에 대한 정보는 domesticworkers.org를 참조하십시오.
- **Hand in Hand: 가사 고용자 네트워크.** 가정에서 효과적이고 깨끗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고용 절차 및 팁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domesticemployers.org를 참조하십시오.
-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COVID-19 기간 동안 직장 법률에 대한 최신 정보는 nyc.gov/workers를 참조하십시오.
- **NYC 중소기업 서비스(SBS): NYC Means Business(재개업 정보)**는 nyc.gov/sbs를 참조하십시오.
-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COVID-19 직장 준비 가이드는 osha.gov를 참조하십시오.
-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 [가사](http://labor.ny.gov) 근로자 고용주 및 [가사 근로자 권리 장전에 대한 사실](http://labor.ny.gov)을 확인하려면 labor.ny.gov를 방문하십시오.

¹² COVID-19 기간 동안 직장 법에 대한 개정안은 nyc.gov/workers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지역,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 병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III. 가사 노동자를 위한 기타 자료

-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 임금, 급여 또는 부적절한 건강 및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labor.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 DCWP 노동정책과 기준 사무소(OLPS)에 (212) 436-0380번으로 전화하거나 또는 nyc.gov/workers를 방문하여 뉴욕시 유급 안전 및 병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 가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문의하거나 무료 법률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려면 OLPS Paid Care Advocate에 (646) 330-888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NYC 인권 위원회:** (212) 306-7450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humanrights를 방문하여 시법에 따른 차별 및 합리적 편의에 관한 귀하의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 **뉴욕주 인권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888) 392-3644번으로 전화하거나 dhr.ny.gov를 방문하여 주법에 따른 차별 및 합리적 편의에 관한 귀하의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소개

노동정책과 기준 사무소의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OLPS)는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NYC의 중앙 자원입니다. OLPS는 모든 근로자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직장을 만드는 노동 기준과 정책을 보호하고 장려합니다. OLPS의 유급 간병 사업부(Paid Care Division)는 유급 간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급 간호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 복지 및 교육을 포함하여 유급 간병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